

인천나눔의집 운영규정

전 문

인천 나눔의집은 대한성공회 헌장법규를 준수하며,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에서 만들어진 나눔의집 정신, 나눔의집 영성, 나눔의집 선언, 나눔의집 주요활동을 따른다.

1. 나눔의집 설립정신은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누가 4:18) 구원의 말씀 속에서 나눔의집은 가난한 이웃들이 하느님 자녀로서 자신들의 인간적 존엄에 대하여 눈뜨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모든 질곡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 나서게 하는 복음을 실천하는 신앙운동을 실천한다.

나눔의집은 “노동, 목상, 투쟁과 삶의 공동체”로서 노동의 신성함을 깨닫고 실천하며 불의와 부정의에 시달리는 고난 받는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구현해 나감과 아울러 목상과 간절한 기도로 스스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임을 하느님 앞에 고백한다.

2. 나눔의집의 영성

첫째 우리는 예수와 복음을 몸으로 사는 부활의 증인이고자 한다.

둘째 우리는 기도(목상)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

셋째 우리는 노동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

넷째 우리는 공동체로 살고자 한다.

다섯째 우리는 투쟁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

여섯째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자 한다.

3. 나눔의집 선언

첫째 나눔의집은 가난한 이웃들의 참된 벗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둘째 가난의 영성에 기초하여 소비지향, 개인주의, 성장위주 발전 전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를 거부한다.

셋째 사회적 배제·소외에 대항하여 가난한 이웃들의 자발적인 연대로 사회와 단절된 삶을 회복한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대안공동체를 만든다.

4. 나눔의집 주요활동은

첫째 나눔의집 영성을 실현하고 확장하는 활동,

둘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활동,

셋째 가난한 이웃들의 자발적 연대 조직(소모임) 지원 활동,

넷째 가난한 이웃을 위한 대안공동체 형성·지원 활동,

다섯째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안고 있는 이웃들의 사회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운동, 인권운동,

여섯째 나눔의집 활동목표와 지향에 부응하는 지역사회단체 연대 활동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인천나눔의집”이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Incheon house of sharing”으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인천나눔의집의 설립목적은 저소득 빈곤계층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나눔운동의 확대와 대안적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른 각 사회선교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게 한다.

제3조 (소재지)

인천나눔의집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의 관할지역하에 있는 인천지역에 위치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모법인”이라 함은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을 말한다.
- ② “교구”라 함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를 말한다.
- ③ “나눔의집”이라 함은 대한성공회 인천나눔의집을 말한다.
- ④ “교회”라 함은 나눔의집 신앙공동체를 말하며, 나눔의집 내의 시설 중 정기적으로 미사를 드리고 있는 독립된 예배공동체라 할지라도 교구의 선교교회 또는 교회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도 이에 속한다.
- ⑤ “시설”이라 함은 나눔의집에 소속된 이용시설, 생활시설, 지역자활센터, 관립위탁시설 및 독립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회선교 사업분야를 말한다.
- ⑥ “직할사업”이라 함은 시설의 형태가 아닌 사회선교사업 중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지속성을 가진 사업을 말한다.
- ⑦ “단위사업”이라함은 제⑤항 시설과 ⑥항 직할사업을 포괄하여 말한다.
- ⑧ “사무국”이라 함은 나눔의집 내에 설치한 사무국을 말한다.
- ⑨ “주교”라 함은 현재 재임하고 있는 대한성공회서울교구장 주교를 말한다.
- ⑩ “관할사제”라 함은 대한성공회서울교구장 주교가 임명한 나눔의집의 관할사제(원장)를 말한다.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

나눔의집의 회원은 제2조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구성)

나눔의집 회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① 일반회원
- ② 후원회원

제 7 조 (회원의 권리)

- ① 일반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후원회원은 재정과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총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① 나눔의집 운영규정과 제 규정 준수
- ②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준수
- ③ 회비의 납부

제 9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나눔의집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규정

제1절 조직의 구성 및 편성

제10조 (구성)

나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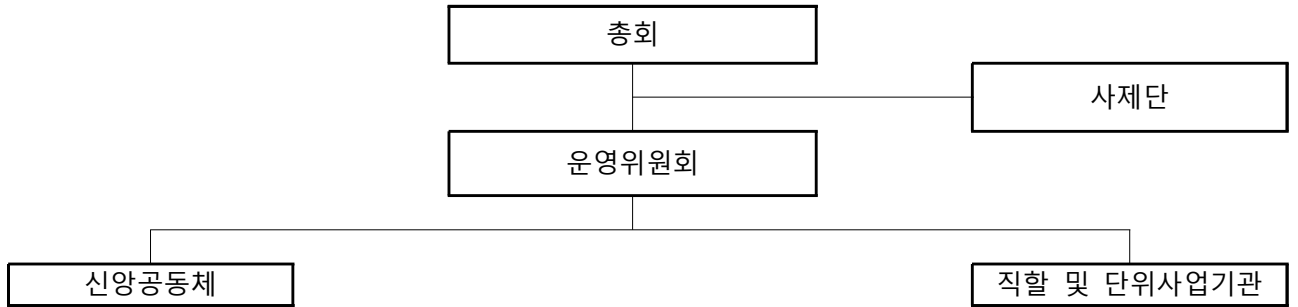
- ① 제4조 ④항에 해당되는 조직으로서 정기적으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예배공동체인 신앙공동체를 포함한다. 기타 다른 예배공동체도 제4조의 ④항에 따른다.
- ② 제4조 ⑤항에 해당되는 조직으로서 사회선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 시설은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서비스센터 등이 포함된다.
- ③ 제4조 ⑥항에 해당되는 조직으로서 사회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눔의집 또는 사무국에 소속된 직할사업 중 시설의 형태가 아닌 가정결연사업, 푸드뱅크사업, 지역사업 등이 포함된다.
- ④ 제4조 ⑧항에 해당되는 조직으로서 사회선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

국이 포함된다.

제11조 (기구 및 조직도)

나눔의집을 운영하기 위한 기구는 다음과 같다.

- ① 총회
- ② 운영위원회
- ③ 사제단



제2절 총회

제12조 (구성) 총회는 나눔의집의 최고의결기구이며 구성은 나눔의집의 전체 회원으로 한다.

제13조 (종류와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 가. 일반회원의 1/3의 요청이 있을 때
 - 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요청이 있을 때
 - 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나눔의집의 해산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③ 기본재산의 처분과 취득,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④ 예산과 결산의 승인
- ⑤ 사업계획의 승인
- ⑥ 기타 중요사항

제15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결권의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계된 당사자
- ② 금전과 재산의 수수 또는 수송에 관한 의결사항에 관계된 당사자

제17조 (의장)

- ① 관할사제가 총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관할사제가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의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가. 대내외적으로 나눔의집을 대표
 - 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역할

제3절 사제단

제18조 (관할사제의 임명과 임기)

- ① 관할사제는 주교가 임명하거나, 교회위원회의 청빙으로 주교의 승인에 의한다.
- ② 교구의 헌장법규에 의거하여 주교가 관할사제 대신 관리사제를 파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③ 관할사제의 임기는 제①항에 결과에 따른다.

제 19조 (관할사제의 직무대행)

- ① 관할사제의 유고시에는 관할사제가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 2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들로 구성한다.

- ① 사제단 운영위원으로서 나눔의집에서 시무하고 있는 사제와 부제 전원
- ②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신자회장 등 신앙공동체의 대표 1인
- ③ 인천나눔의집 사무국장(혹은 실무자 대표) 및 사회선교사업을 진행하는 직할 및 단위사업기관 대표자 각 1인
- ④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성직자가 단위사업의 대표로 전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차하위 실무자 1인을 추가 선임한다.

구분	사제단 운영위원	사제단을 제외한 운영위원
구성	사제 및 부제 전원	신자회장 등 신앙공동체의 대표 1인 인천나눔의집 사무국장(혹은 실무자 대표) 1인 단위사업별 대표자 각 1인

제 21조 (운영위원의 자격)

성직자를 제외한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관할사제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① 인천나눔의집에서 3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견진을 받은 자.
- ② 인천나눔의집에서 만3년 이상 상근하며 실무경력을 갖춘 자.

제22조 (운영위원의 임기) 모든 운영위원은 연임될 수 있으며,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제20조 ①,②항에 의하여 선임된 운영위원은 그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을 임기로 한다.
- ② 제20조 ③항에 의하여 선임된 운영위원은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만2년이 지난 후, 첫 번째 1월말 또는 7월말까지로 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인천나눔의집 사회선교 정책에 관한 사항.
- ② 사회선교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의 개시, 기존사업의 중단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부동산의 매입·매각 및 일천만 원 이상 자산의 취득과 매각
- ④ 단위사업의 대표자에 대한 임용, 해임, 중징계에 해당하는 인사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⑤ 또한 사회선교사업 관련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역할을 한다.
 - 가. 사회선교이념에 대한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나. 단위사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결과에 대한 심의·조정·승인
다. 단위사업에서 제출한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조정·승인
라. 단위사업의 실무자 인사에 대한 의견 심의·조정·승인
마. 실무자의 교육, 훈련, 공동체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기획과 실행
바. 제 '나'호와 제 '다'호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단위 시설은 인사, 예산의 운용, 사업 등에서 독립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사. 제 '바'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인사,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규정으로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⑥ 제④항의 인사권은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관할사제가 승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 (운영위원의 책임과 의무)

운영위원회의 각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 ① 심의·의결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재정에 대한 책임.
- ② 나눔의집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 ③ 나눔의집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위한 책임
- ④ 각 단위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제25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사제, 간사는 나눔의집 사무국장이 역임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월 1회의 정기회의와, 사안에 따른 임시회의를 가진다.
-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는 관할사제는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④ 부득이한 경우로 관할사제가 궐위되거나 고의적으로 소집을 기피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개의와 정족수)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상정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회기 전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통해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의사록)

- ①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 나눔의집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 2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 및 의결사항은 홈페이지게시판, 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과, 요령에 한하여 운영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절 기타 위원회

제29조 (기타 위원회) 관할사제 및 운영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명시할 수 있다.

- ① 인사위원회
- ② 특별위원회
- ③ 신앙공동체 운영에 관련된 위원회
- ④ 직할 및 단위사업 등 사회선교사업에 관련된 위원회

제30조 (운영 및 관리조직)

- ① 나눔의집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장 자산과 회계

제31조 (자산의 구분)

- ① 나눔의집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자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 부동산

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32조 (재산의 관리) 기본자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교의 허가를 받는다.

제33조 (경비와 유지방법) 나눔의집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후원자로부터 받은 후원금, 찬조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③ 기본자산으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④ 이용자 및 수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입소료, 이용료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 (회계의 구분)

① 인천나눔의집 회계는 통합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회계, 교회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교회회계, 단위사업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밖에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회계처리는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독립적인 기준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제35조 (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7조 (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성과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과 승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통합재정으로 운영되는 단위사업의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의 예산은 관할사제가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작성하여 매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교에게 제출한다.

② 단위사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단위사업장의 대표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할사제에게 제출한다.

③ 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신자회장이 작성하여 교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할사제에게 제출한다.

제38조 (예산의 추가경정)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되거나 추가 또는 경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년3회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 (사업 및 예산의 결산) 사업 및 예산의 결산과 승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통합재정으로 운영되는 단위사업의 사업결산 및 일반회계의 결산은 관할사제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매년 1분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교에게 제출한다.
- ② 단위사업의 사업결산 및 예산결산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단위사업장의 대표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할사제에게 제출한다.
- ③ 교회의 사업결산 및 예산결산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자회장이 작성하여 교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할사제에게 제출한다.

제40조 (감사) 교회 및 단위사업의 재무회계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한다.

- ① 감사는 총회에서 2인을 선출한다.
- ② 감사는 교회 및 단위사업의 모든 부분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③ 감사는 익년 1월 중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규정의 변경 및 해산

제41조 (해산) 나눔의집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한성공회 헌장법규에 의한 주교의 명으로 해산한다. 나눔의집의 해산이 승인되면 잔여재산 중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의 소유를 제외한 재산은 국가, 지방단체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6장 보칙

제42조 (준용과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제5조에서 명시한 각 조직에 적용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교구의 헌장법규와 그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행위 및 제규정을 상위규정으로 적용한다.
- ② 본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나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나눔의집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본 규정에서 예외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 시설이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을 명문규정으로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3조 (별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① 각 위원회를 위한 규정
- ②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

- ③ 재무회계규정
- ④ 보수에 관한 규정
- ⑤ 사무관리 규정
- ⑥ 사무국에 관한 규정
-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 ① 본 규정 제4조 ⑥항의 단위사업들은 동 규정 제37조 ②항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연말까지는 인사 및 예산의 운용에 관하여 기존의 독자적인 운영을 인정한다.
- ② 모든 단위사업의 대표자는 본 규정의 시행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자체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총회의 의결 위임) 본 규정 제15조의 의결정족수를 구성함에 있어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총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타 회원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본인을 제외한 1명의 의결권 이하로 제한한다.